#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284

발의연월일: 2025. 2. 19.

발 의 자:이수진·김문수·송옥주

김종민 • 전종덕 • 박홍근

서미화 · 김준혁 · 전진숙

민병덕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공 안전시설(방위각제공시설)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179명이 사망하는 사 고가 발생함.

그런데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할 당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된 바 있는데, 이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·착륙 시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,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,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

려는 것임(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중 이·착륙하는 항공기에 진로를 제공하는 방위각제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(이하 "방위각제공시설등"이라 한다)은 항공기가 충돌하는 경우항공기의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.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방위각제공시설등의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항행안전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43조(항행안전시설의	설치) ①	제43조(항행안전시설의 설치) ①
~ ④ (생 략)		~ 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⑤ 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
		중 이・착륙하는 항공기에 진
		로를 제공하는 방위각제공시설
		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		항행안전시설(이하 "방위각제
		공시설등"이라 한다)은 항공기
		가 충돌하는 경우 항공기의 손
		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
		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어야
		<u>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	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
		따른 방위각제공시설등의 재질
		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국
		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		따라 공항운영자 및 「항공사
		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
		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
		<u>한다.</u>
⑤ (생 략)		<u>⑦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